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입원치료비 Q&A

질병관리청 2021.3.30.

(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) 입원치료(격리)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사·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.

1. 지원대상

Q1.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?

-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*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

*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

Q2.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?

-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(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),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
 -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,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*에 따라 차등 지원
 -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, 방역조치위반(격리명령,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)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

*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(`20.8.24부터)에 따라,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“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”에 따른 차등 지원

Q3.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?

-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하며, 관할 보건소에 신청
 - * ‘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’ 참조 [보험급여과-1515, 2020.4.3.]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)

Q4.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?

-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*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

Q5.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(요양)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*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(요양)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?

-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
 - 의료(요양)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

Q6.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(격리해제)자가 전원환자 통보기관(요양병원)에 전원 된 경우 지원은?

-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(요양병원)에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을 준수하며, 감염예방·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를 지원하되 1차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
 - (격리 해제자)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

전원된 경우 산정*

- (비접촉자) 통보기관(요양병원)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*,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를 격리입원 기간(최대 14일) 동안 산정** 가능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

*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

2.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

Q1.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*된 날까지 지원

*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‘격리해제 기준’ 참조

-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‘격리해제 기준’에 따라 격리해제 대상으로 추가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

Q2.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?

-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,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를 미지급하며 확진자 및 의사환자, 조사대상유증상자의 지원범위는 상이함

- 코로나19 임상증상*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**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

*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’ 사례정의 참조

*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‘격리해제 기준’ 참조

- 다만 담당의(소견) 및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,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**입원치료통지서**를 재발급(격리장소 변경)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**익일부터**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

*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’ 참조

Q3.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?

-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질환에 관하여는 지원 불가
 - 격리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,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

Q4.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?

-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
 - ‘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(6.25.)’ 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‘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2)’ 제출
- (검사료)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(건강보험 적용)로 전환하거나, ‘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2)’ 제출 시 지원
 - 호흡기 검사 : 인플루엔자 A,B 바이러스항원검사,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

(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) 인플루엔자 A, B 바이러스 항원검사,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**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**

*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342호 행정해석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선별진료소 ‘인플루엔자 A·B바이러스항원검사[간이검사]’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)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

- (제증명료)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,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
 -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,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
 - PACS CD COPY, 검사기록지 사본

- (약제, 치료재료) ‘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2)’ 제출 시 지원
- (병원비품)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,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
 - 환의, 체온계, 이불, 시트, 대변기, 소변기 등
 - 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-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
- (식대)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

3. 신청 및 지원절차

Q1.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?

제출 서류	
공통서류	1. 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1부 (서식1) 2.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 * 진단일, 확진검사 일 등이 기재된 ‘ 법정감염병 신고서 ’로 같음할 수 있으나 격리입원기간 이 2주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질환 등이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수 4.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 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 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‘ 법정감염병 신고서 ’로 같음할 수 있음
격리입원 대상자 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1. (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)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. 통장(계좌) 사본 1부
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1부 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

*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‘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2)’을 함께 제출

Q2.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?

○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

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

<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(의료기관/환자)>

-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
-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
-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(또는 보호자)가,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제출
-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
-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(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)에 지급

- 다만,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,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
Q3.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‘법정감염병 신고서’로 갈음되는지?

- ‘법정감염병 신고서’ 로 갈음될 수 있으나,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,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, 코호트 격리,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**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** (응급기록, 진료기록, 경과기록, 활력징후기록지 등)

Q4.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,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?

-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
-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

Q5.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?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**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**

4. 기타

Q1.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?

-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**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**
 -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
 -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

Q2. 산재,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?

- **보훈환자, 산재환자**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, 기존 제도(보훈, 산재)에서 보호(지원)하고 일부 **환자본인부담금(필수 비급여)**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

서식 1

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서식

<서식> 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서식

접수보건소명		접수일자	
신청인 (개인 또는 의료기관)	성명(의료기관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)	
	전화번호	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(의료기관은 작성 생략)	
	주소		
격리입원 대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국적	
	신고일자 ¹⁾		
	주소		
격리입원 세부사항	진단명		
	격리시작일	격리해제일	
	확진검사 확인일		
입원· 진료비	본인 부담금	원 원	
	비급여(외국인의 경우)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65조(사·도가 부담할 경비)의 4 및 제67조(국고부담 경비)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 ²⁾		
공동서류	1.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* 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 확인일,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**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대체가능. 단,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,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(응급기록, 진료기록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
	3.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
격리입원 대상자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1.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(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)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3.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) 「신고일자」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
- 2)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